

사외이사추천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.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5조(대표위원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대표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대표위원이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대표위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팩스,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전자우편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대표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안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2조(간사)

위원회는 간사를 두고,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2.03.24.부터 시행한다.